

# 2018년도 영오면

##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18. 10. 23.(화) ~ 10. 25.(목), 3일간
- 감사대상: 영오면
- 감사인원: 기획감사실장 외 5명(재무과 1명 포함)
- 감사범위: 2016. 10. ~ 2018. 10. 감사일 현재까지 면정업무 전반
- 주요 감사내용
  - 각종 주요시책, 지시사항 이행여부
  - 예산과 회계처리 및 물품관리실태
  - 각종 세수 부과·징수 실태
  - 각종 민원처리의 관련법규 및 절차 이행여부
  - 농지관리 등 산업경제행정 전반
  - 기타 복무실태 등

### II. 감사성과

- 행정상·재정상 조치

구분	행 정 상 (건)				재 정 상 (건, 원)				
	계	시정	주의	현지 조치	계	회수	추징	기타	
처분 요구	18	4	12	2	건수	2	1		1
					금액	1,767,240	885,000		882,240

- 신분상 조치 : 훈계1, 주의12

### Ⅲ.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① 감사결과 지적에 대한 처분요구 목록

일련 번호	건 명	요 구 내 용			비 고
		행정상	재정상		
			구분	금액(원)	
1	세입세출외 현금 집행관리 소홀	시정	기타	882,240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	인감증명 발급 소홀	주의			
4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주의			
5	시설공사 하자 검사 업무 소홀	주의			
6	계약업무 소홀(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시정			
7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8	@@ 및 ##마을 농로개설공사 개거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9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뒤채움잡석 시공 부적정	주의			
10	%마을 안길정비공사 합판거푸집 정산 업무	시정	회수	835,000	
11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자격 확인 의무 소홀	주의			
12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자 일일점검 소홀	주의			
13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소홀	주의			
14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요구 미이행	시정			
15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불필요한 서류 징구	주의			
16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 소홀	주의			
17	정부수입인지 징구 누락 및 소인업무 소홀	현지조치			
18	물품관리 업무 소홀	현지조치			
합 계		계	18	계	1,717,240
		시정	4	회수	835,000
		주의	12	추징	
		현지조치	2	기타	882,240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	성 명	A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	2016 ~ 2018	시정	기타	882,240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세입세출외 현금 집행관리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연도별	수 입(단위: 원)		지 출(단위: 원)		비고(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7	1,132,694	11	244,454	
2016년	5	539,787	2	615	539,172
2017년	5	162,390	3	3,582	697,980
2018년	17	430,517	6	240,257	888,240

구분	건수	금액(단위: 원)	비고
수입결의서 없이 지출	9	525,540	
지출결의서 없이 지출	5	4,197	
품의 없이 수입 및 지출	7	59,246	

### 【내 용】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에 ①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 시행)에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방법 및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내지 제8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무회계규칙」 제76조제5항에 근거하여 일반계좌로 현금을 납부 받은 경우, 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는 출금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금이 입금된 당일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금고은행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에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금, 개산금에 대한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부터 제50의3호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라고 되어 있으나
- ○○에서는
  - 2016. 10.경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입 27건, 1,132,694원, 지출 11건, 244,454원을 지출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 수입결의서 없이 입금 처리한 9건, 525,540원, 지출결의서 없이 5건, 4,197원을 지출처리하였고, 품의 없이 수입 및 지출 7건 59,246원을 처리하였으며
  - 회계말에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반납처리하여야 함에도 882,240원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집행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 2. 처분요구

- ▶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반납대상 금액 금882,240원에 대하여 반납 후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시정·기타)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2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	성 명	A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6~2018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1. 위법·부당내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 시행)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에서는

- 2016. 10.경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건, 12,419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6건 3,331천원을 집행하였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나 하나 특정 분기에 집중되어 지출하였고
- 이중, 16건을 현금지출하면서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하나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방침이 없을뿐더러 기지급, 금회지급을 명시하여 지급액을 관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3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	성 명	A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6~2018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주의</span>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인감증명 발급 소홀**

## 1. 위법·부당 내용

○ 「인감증명법」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⑥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 ○○에서는

- 2016. 10.경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84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없음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사유나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 않고 발급하고,
-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발급대장에 기재를 하고 수령인이 본인일 경우에는 무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무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거나 무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4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	성 명	A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	2016~2018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0조(과태료의 징수),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제1항과 제2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제3항에 군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제1호에서 제6호까지를 규정하고 있고
  
- 「고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전결대상사무)제1항에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사항에서 읍·면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위업무 민원처리 중 주민등록 과태료 업무는 담당자 기안, 담당주사 전결로 기재되어 있음

○ ○○에서는

- 2016. 10.경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4건, 24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의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담당주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감액처리 하는 등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5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B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	2016~2018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시설공사 하자 검사 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1. 가. 에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라한다)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 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고성군 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업무규정」 제4조에 의하면 시설공사에 대한 최초의 하자검사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의 검사는 년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며, 하자담보기간 만료시는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16. 10.~ 2018. 10. 감사일 현재까지 ‘&&마을 자연발생유원지 지하수 개발공사’ 등 77개 사업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140회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6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B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7	시정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계약업무 소홀(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단위: 원)

공사명	계약금액 (정산액기준)	지급일	하자보수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	계약상대자
***(WW지구) 하상정비사업	34,475,000	'17.12.21.	2017.12.20.~ 2019.12.19.	1,034,250	(주)□□ E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8. 1. 1.)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을 제시하여 예산 집행 절차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제3호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WW지구) 하상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금액 34,475천원(정산금액 기준)으로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제외 대상 공사가 아님으로 검사가 완료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 1,034,250원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5항에 따라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 징구하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요구

- ▶ 하자보수보증금 1,034,250원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5항에 따라 납부토록 조치하시고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시정)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b>NO. 7</b>		<b>감 사 담 당 자</b>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B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8	주의	-	-	-

**제 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연번	계약건명	지급명령 번호	지급일자	계약금액 (단위:원)	미기재사항	비고
1	구.농민상담소 문 수리 및 청사 화장실 창문 수리	80	2018.6.5.	396,000	결의서 상이, 계약 사항 작성 소홀 등	
2	사무실 시건장치 및 의자 고장 수리	81	2018.6.5.	187,000	결의서 상이, 계약 사항 작성 소홀 등	

**【위법 · 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에는 계약은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부터 별지 제50호 서식까지<sup>1)</sup>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8.6.5.(지급일자) 구.농민상담소 문 수리 및 청사 화장실 창문 수리 등 상기 현황 2건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사용하였으며, 지출결의서에 각종 기록사항 및 이면 승낙사항 등을 누락하여 사실상 계약 없이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1) <별지 제48호 서식>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별지 제49호 서식> 삭제, <별지 제50호 서식>(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8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시설주사	성 명	C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6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 및 ##마을 농로개설공사 개거 설계변경 부적정**

## 1. 위법·부당내용

### 【사업개요】

OO에서는 ##리 등 1개소에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2016.12.2. (주)◇◇ 대표 F와 18,790천원에 「@@ 및 ##마을 농로개설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2016.12.26. 토지사용 협조 애로 및 농경지 침수 관련 민원을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20,971천원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관련규정(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설계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감사결과 문제점】

- ○○에서는 농로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미협조, 개거 설치구간이 2018.10.3. ~ 2018.10.6. 기간 동안 호우시 노면수로 인한 침수 발생 등으로 개거의 높이를 당초 계획상의 0.5M보다 더 높게 설치 해달라는 민원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하겠다고 실정보고를 하였다.
- 개거 설치 예정 구간인 ○○ ※※리 00-00번지는 같은 면 ※※리 00-00 인접 하천에 설치된 취입보에서 하류에 위치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로[0.4×0.4]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수로관 일부를 철거하고 개거 [0.5×0.5]를 L=44m로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다.
- 감사 기간중 현장 여건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개거설치 구간의 상·하류 용수관은 0.4×0.4 형태의 직사각형 수로관[플룸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여건상 노면수 일부는 농경지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 관 내부, 유수의 특성상 상·하류 용수관의 통수단면이 개거설치 구간보다 작은 경우에는 하류부에 용수가 인접 농경지로 월류하는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없으며, 노면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도로와 용수관 사이를 토사법면으로 계획하여 용수관 내부로 노면수가 유입되도록 유도 할 수 있는 점, 노면수가 유입되는 경우에도 당초 계획상의 통수단면으로 충분히 우수배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용수관 일부구간만 통수단면을 변경하는 사유는 불합리 함에도 이러한 주변 여건에 관한 세심한 주의 없이 개거 벽체 H=0.5M를 H=0.8M로 설계변경하여 2,627천원 상당의 예산을 과다설계 하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9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시설주사	성 명	C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7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생곡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뒤채움잡석 시공 부적정**

## 1. 위법·부당내용

### 【사업개요】

OO에서는 생곡리지내에 생곡소하천 유지관리, 비포장도로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2017.2.16. △△ 대표 G과 17,140천원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계약 체결하고 2017.3.10. 공사구간 시점부 인근에 강우로 인한 석축호안 L=9m가 유실되었다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18,740천원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관련규정(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473호)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138조(시공확인),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설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시공과정이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 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뒤택움 돌은 유수에 의해 사력이 유실되지 않도록 대소의 것이 서로 공극을 메우는 형상과 치수의 것으로 선정하고 돌쌓기 후면에는 충분한 두께의 뒤택움을 하고, 뒤택움 돌의 두께는 하부로 갈수록 크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감사결과 문제점】**

- ○○에서는 2017.3.8. 해빙기 강우로 인하여 공사구간 시점부에 석축호안 L=9M가 유실되어 추가붕괴 우려를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추가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실정보고를 하고 2017.3.10.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다.
- 석축호안 유실구간은 구조물 상부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 설치되어 있어 석축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석 뒷길이와 뒤택움잡석 부설 폭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최소 1.0M 이상을 절단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그 추가 공사비는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에서는 콘크리트 절단·깨기에 소요되는 설계도면과 공사비를 반영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시공상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석축호안을 설계하여야 하나, 변경설계서에는 콘크리트 절단과 깨기 공사비를 누락하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량산출서

에 전석쌓기[석축 뒷길이 0.58M, 뒤채움잡석 부설폭 0.4M] 수량만 작성하여 설계내역서에 계상하였다.

- 감사 기간중 현장 조사한 결과, 석축과 뒤채움잡석 부설·다짐을 위해 최소 1M 이상을 도로를 절개하여 석축호안을 시공하여야 하나, 설계서에 명확히 기재된 기준이 없어 시공자는 1M가 아닌 0.8M를 절개하여 시공함으로써 뒤채움잡석의 소요 두께를 확보하여 시공 할 수 없었으며, 충분한 다짐시공 등 적절한 시공품질을 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시공이 완료되기 전 도면 작성, 재시공 등 적정할 조치를 취하여 하나, ○○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변경설계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0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시설주사	성 명	C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8	시정	회수	835,000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마을 안길정비공사 합판거푸집 정산 업무**

## 1. 위법·부당내용

### 【사업개요】

OO에서는 ●●리지내에 하천 미정비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 해소를 사유로 2018.3.12. ◎◎ 대표 H와 19,344천원에 「%%마을 안길정비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2018.4.5. 시·종점부에 재해 위험예방을 위한 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21,720천원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관련규정(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적절한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473호)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138조(시공확인),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설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시공과정이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

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감사결과 문제점】

- 설계서 작성 및 공사 시공을 함에 있어, 콘크리트 포장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판거푸집 설치 수량  $A=34.8\text{m}^2$  [도로폭(B)  $L=20\text{m}(B=4.0\text{m})$ ,  $L=71\text{m}(B=2.5\text{m})$ ,  $L=25\text{m}(B=1.8\text{m})$ ]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설계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폭(B=4.0m) 구간은 포장 양측의 건축물 벽체와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폭(B=2.5m, B=1.8m)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과 접하여 레미콘을 타설하는 구간으로 합판거푸집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수량산출서 작성시 합판거푸집은  $34.8\text{m}^2$ 가 아닌  $14.4\text{m}^2$ 로 계상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에 대한 세심한 주의 없이 이를 설계서에  $34.8\text{m}^2$ 로 반영하는 등 설계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시공 과정에서도 시공자는 설계서와 동일하게 합판거푸집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 ○○에서는 해당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대금 21,720천원을 지급하여 835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요구

- ▶ 공사대금 중 과다 지급한 금835,000원을 회수 조치 후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시정·회수)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1	감사담당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D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6~2018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주의</span>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자격 확인 의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조회대상자	해당년도	분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여부(○,×)	비고
I외18명	2016	4/4	×	
I외14명	2017	2/4	×	
I외14명	2017	3/4	×	
I외14명	2017	4/4	×	
I외15명	2018	3/4	×	

### 【위법·부당내용】

- 농업정책과-2020(2016.2.15.)호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추진계획」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신청에 대해 거주사실 확인, 농지소유, 지원대상여부 확인, 재학조회 후 분기별 명단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II세부추진계획 2-나-(1)에 의하면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하여 직장근무, 사업장등록여부 등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OO에서는 2016년에는 4/4분기, 2017년에는 2/4, 3/4, 4/4분기, 2018년에는 3/4분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하여 직장근무, 사업장등록여부 등 확인을 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2	감사담당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D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6~2018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주의</span>	-	-	-

**제 목 :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자 일일점검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사 무 명	사업연도	단계	사업기간	참가인원	위반사항
공공근로사업	2016년	2단계	2016. 7. 4.~ 12.9.	J 등 2인	일일점검소홀
	2017년	1단계	2017. 1. 16.~ 6.30.	K 등 2인	
		2단계	2017. 7. 3.~ 12. 15.	L 등 2인	
	2018년	1단계	2018. 1. 15.~ 6. 29.	M 등 2인	
희망근로사업	2018년	-	2018. 8. 1.~ 12. 31.	N 등 6인	

**【위법 · 부당내용】**

- 「2016년 공공근로사업지침」 제10장 1(사업장관리) 및 2018 희망근로지  
원사업 추진지침 9장(참여자 관리)에서는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시행사업별로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작업장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근무자**  
에게 임금 지급사례(도덕적 해이)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일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고 점검 관리하는 서류(작업일지)를 2016.7.4.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한 사실이 없어 공공근로사업 감독자로서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3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세무주사보	성 명	송형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	2017 ~ 2018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주의</span>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 관련문서

- 재무과-6426(2017.2.27.) 2017년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 통보
- 재무과-37138(2017.11.6.)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 재무과-6406(2018.03.06.)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 재무과-25844(2018.08.21.)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

○ 수감일 현재 ○○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수와 금액이 490명 850건 66,890,050원에 이르고,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22명 101건 46,777,300원인데 5명에 대하여만 체납사유분석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감대상기간인 2016.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체납세 납부독려 및 전산관리 실적이 339건(일일 평균 0.46건)에 그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4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세무주사보	성 명	송형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	2017~2018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시정</span>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요구 미이행**

## 1. 위법·부당내용

### ○ 관련문서

- 재무과-6426(2017.2.27.)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통보
- 재무과-37138(2017.11.6.)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 재무과-6406(2018.03.06.)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 재무과-25844(2018.08.21.)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요건)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 실태 점검결과 진주시 X 외 2명(체납액 3,188천원)에 대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후 관리하여야 하나, 무재산 및 환가가치 없는 재산 압류 등 징수불능 체납액(Z외 4명 4,461천원)에 대해 결손처분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지방세 체납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요구 및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조치를 하시고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시정)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5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D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7~2018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불필요한 서류 징구**

##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연 도	사무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위반내용	비 고
2017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5420041-665	2017.8.29	농업경영계획서 징구	
2017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5420041-1008	2017.12.21	농업경영계획서 징구	
2017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5420041-978	2017.12.8	농업경영계획서 징구	
201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5420041-412	2018.4.23	농업경영계획서 징구	

**【위법 · 부당내용】**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에서는 상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접수 4건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발급신청을 하는 자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6	감사담당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D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7	주의	-	-	-

**제 목 :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현 황】

관리읍 면동	민원사무명	신청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OO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S	경남고성아0000	2017. 8. 16.	제작증 양수인란 공란 처리
OO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R	경남고성아^^^^	2017. 6. 13.	
OO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T	경남고성아>>>>	2017. 2. 14.	

###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1항(사용신고)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

차에 한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이륜자동차제작증을 제출받았으나, 제출된 이륜자동차제작증이 소유권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인데도 제작증의 내용을 보면 양도금액 및 양도일자, 양수인란이 빈란으로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수리를 하는 등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7		감사담당자			
		직급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D
소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6~2017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현지 조치</span>	-	-	-

**제 목 : 정부수입인지 징구 누락 및 소인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회계년도	사 업 명	도금액 (천원)	계약일자	내용	비고
2016	☆☆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9,782	2016.12.12	미소인	
2017	■■ 중대 보수공사(변경)	11,000	2017.3.7	인지세 미납 (20천원)	

**【위법·부당내용】**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3호에서는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는 그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금액을 2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8조(납부) 제1항은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 같은 법 제10조(소인)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에서는 「○○ ■■■ 보수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세문서(계약서)에 계약금액이 11,000천인데도 20,000원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2016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건에서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소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8	감사담당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B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OO	2018		-	-	-

**제 목 : 물품관리 업무 소홀**

## 1. 위법·부당내용

### 【 OO 복사기 관련 정수 현황 】

정수 구분	정수 연번	물품분류번호	물품명	책정 수량	배정수량	보유 수량	금액	비고
정수	50	4410-1501	복사기	1	1	1	6,967,420	실제 구입 물품
정수	51	4410-1503	다기능복사기	2	3	2	4,385,000	정수 요청 물품

### 【 위법·부당 내용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조 제2항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지정할 수 있으며, 제3조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읍면의 물품관리관은 읍·면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 재무과-28820(2018.8.21.)호로 시달 된 2018년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제출 공문에는 2018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첨부되어 있으며, 참고2-2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해설에는 정수물품 57종의 품명해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7년 9월에 2018년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기능복사기 1대를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로부터 정수 대체 승인을 받아 2018년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 8,500천원 편성하여 ○○-1609(2018.2.22.)호에 의거 다기능복사기가 아닌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정수 배정수량을 정리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